

원종 아이원시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Chungak 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코로나19 관련 홍보관 운영여부 및 관련 유의사항]

- 「원종 아이원시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홍보관 관람을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www.ionecity.kr)를 통하여 확인바랍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에 한하여,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일정과 실시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청약·계약 관련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문의는 분양 상담 전화(☎ 1811-7734)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용검사(2022.02.22.)된 주택으로 마이너스옵션제를 실시할 수 없으며, 청약에 당첨된 동·호수의 미감재를 본 아파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아파트는 2022년 02월 22일 사용검사가 완료된 아파트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옵션풀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용검사(2022.02.22.)된 후분양 아파트이므로 마이너스옵션제를 실시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준공된 세대이므로 세대의 기시공된 기본옵션, 플러스 옵션 등 모든 내부 여건을 파악하고 계약해야 하며, 기시공된 사항에 대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변경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홍보관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미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체온 확인 시 37.5도가 넘을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으로 인한 홍보관 방문 시 입장은 본인 1인만 입장 (동반자 1인 이상 동행 불가,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자격확인 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3.07.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파열지구 및 청약파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파열지구 및 청약파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파열지구 및 청약파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
| -청약파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 제7호) | 7년간 |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파열지구 및 청약파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07.) 현재 부천시 1년 이상 거주자(2021.03.07. 이전부터 계속 거주)이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 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천시 1년 이상 거주자(2021.03.07.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부천시는 청약파열지역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90일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 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 구성원”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원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 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 일반공급 | |
|--------------------------------|--|---|---|--|--|--|-------------|
| |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2순위) |
| 세대주 요건 소득 또는 자산 기준 | - | - | - | 필요 | 필요 | 필요 | - |
| | - | - | 적용 | - | 적용 |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기입하여 1개월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기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① 청약통장 기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③ 네이버 인증서 또는 ④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기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 (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YESKEY) | 네이버 인증서 | KB 모바일 인증서 |
|---|---|-------------------|---------|------------|
| APT(특별공급/1·2순위)/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 0 | 0 | 0 | 0 |
| APT무순위/잔여세대/취소 후 재공급 | 0 | 0 | X | X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등·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협력」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 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 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홍보관 또는 은행 청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기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특종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다 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준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록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홍보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홍보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 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나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에 · 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제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제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증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시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yoon.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 · 수도권(인천, 경기) · 지방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위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등 · 호수를 공개한 후 등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자를 표시한 특별공급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등 ·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등 ·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청약과열지역인 부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청약과열지역 내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역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 제한기간 | 3년(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 3년(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17.08.09. 개정된 「주택법」 제 64조 제1항에 의거 전매행위 제한의 경우 부천시는 청약과열지역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부천시 1년 이상 거주자(2021.03.07.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반1순위 | 일반2순위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
| 일정 | 2022.03.17.(목) | 2022.03.18.(금) 해당지역 | 2022.03.22.(화) 09:00~17:30 기타지역 | 2022.03.28.(월) | 2022.04.08.(금)~ 2022.04.12.(화) |
| | | 2022.03.21.(월) | | | |
| 방법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 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홍보관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p>당사 홍보관 -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316, 분양사무실</p>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홍보관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기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홍보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미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 건축허가과 -4157호(2022.03.0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316 번지외 1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13층 2개동 총 132세대 중 일반공급 63세대

특별공급 69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13세대, 다자녀기구 13세대, 신혼부부 26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1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2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제곱미터)

| 주택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 약식 표기 | 주택공급면적(m ²) | | | 주민공 동시설, 방재설, 통신설, 경비설, 관리설, 전기설 | 지상주차 장 지하주차 장 | 합계 | 대지지분 | 총공 급 세대 수 | 특별공급세대수 | | | | | | 일반 공급 세대 수 | 저층 우선 배정 세대 수 |
|------|----------|-------|---------------------|----------|-------------------------|-----------------|-----------------|--|------------------------|-------------------|-----------------|--------------------|----------|-----------------------|------------------|-----------------------|------------------|-------|---------------------|---------------------------|
| | | |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공용 면적 | 소계 | | | | | | 기관 추천 | 다 자 녀 가 구 | 신 혼 부 부 | 노 부 모 부 양 | 생 애 최 초 | 계 | | |
| 민영 | 2021 000 | 01 02 | 070.1200A 070.5600B | 70A 70B | 70.12 70.56 | 15.4236 15.3553 | 85.5436 85.9153 | 1.0671 1.0738 | 27.2607 27.4317 | 113.8714 114.4208 | 15.8863 15.9860 | 24 24 | 2 2 | 6 6 | - - | 3 3 | 13 13 | 11 11 | 1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택 | 939 | 03 | 073.7000C | 73C | 73.70 | 18.4844 | 92.1844 | 1.2349 | 28.6527 | 122.0720 | 16.6974 | 9 | 2 | 2 | 1 | - | - | 5 | 4 | - |
| | | 04 | 074.6100D | 74D | 74.61 | 15.9432 | 90.5532 | 1.1353 | 29.0063 | 120.6948 | 16.9036 | 24 | 2 | 2 | 4 | 2 | 3 | 13 | 11 | - |
| | | 05 | 074.6200E | 74E | 74.62 | 17.6836 | 92.3036 | 1.2501 | 29.0104 | 122.5641 | 16.9058 | 9 | 1 | 2 | 3 | - | - | 6 | 3 | - |
| | | 06 | 075.6000F | 75F | 75.60 | 15.8521 | 91.4521 | 1.1505 | 29.3911 | 121.9937 | 17.1278 | 24 | 2 | 1 | 4 | 2 | 4 | 13 | 11 | 1 |
| | | 07 | 076.7900G | 76G | 76.79 | 18.2656 | 95.0556 | 1.2866 | 29.8540 | 126.1962 | 17.3974 | 9 | 1 | 1 | 1 | - | - | 3 | 6 | - |
| | | 08 | 084.8500H | 84H | 84.85 | 20.2330 | 105.0830 | 1.4216 | 32.9876 | 139.4922 | 19.2235 | 9 | 1 | 1 | 1 | - | - | 3 | 6 | - |
| | | 합계 | | | | | | | | | | 132 | 13 | 13 | 26 | 4 | 13 | 69 | 63 | 3 |
| | | | | | | | | | | | | | | | | | | | |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2)로 표기하였음. (m^2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2 \times 0.3025$ 또는 $m^2 \div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 경비실, 관리사무실,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균린생활시설

■ 지하주차장 높이 : 2.3m

■ 입주금 수납계좌

■ - “을” (입주자)은 당첨 등·호수의 공급대금 및 계약금을 확인 후 계약 기간내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 납부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계약 장소를 방문하시어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갑” (부천 원종 아이원시티)이 지정·통보하는 아래의 지정은행의 지정계좌로만 입금하여야 유효하고, “갑” 이 발행한 입금증을 영수증으로 간주한다.

| 지정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수협은행 | 2020-4829-8514 | 신 용 근 | 지정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함. |

■ 계약자 주택담보대출 안내

- 본 주택은 준공인가 완료된 아파트로써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함(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은 사용검사된 아파트이므로, 잔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며, 잔금은 입주전에 완납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준공인가 완료된 아파트로써 납부 일자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여야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 주택담보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 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신용문제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주택담보대출 취급기관의 암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한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일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 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이며, 이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기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 건설 지역인 부천시는 청약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암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을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암선한 주택담보대출 취급기관과 주택담보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주택담보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시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택담보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주택담보 대출이 불가하거나 주택담보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체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체계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주택담보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주택담보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주택담보대출 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기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 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개시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 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 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 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약식 표기 | 주택 형 | 세대수 | 동호수 | 분양가격 | | | 계약금(10%) | 잔금(90%)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총분양가 | | |
| 70A | 070.1200A | 24 | 101동 206호 | 248,563,600 | 296,436,400 | 545,000,000 | 54,500,000 | 490,500,000 |
| | | | 101동 207호 | 257,685,200 | 307,314,800 | 565,000,000 | 56,500,000 | 508,500,000 |
| | | | 101동 306호 | 250,387,920 | 298,612,080 | 549,000,000 | 54,900,000 | 494,100,000 |
| | | | 101동 307호 | 250,387,920 | 298,612,080 | 549,000,000 | 54,900,000 | 494,100,000 |
| | | | 101동 406호 | 252,212,240 | 300,787,760 | 553,000,000 | 55,300,000 | 497,700,000 |
| | | | 101동 407호 | 252,212,240 | 300,787,760 | 553,000,000 | 55,300,000 | 497,700,000 |
| | | | 101동 506호 | 254,036,560 | 302,963,440 | 557,000,000 | 55,700,000 | 501,300,000 |
| | | | 101동 507호 | 254,036,560 | 302,963,440 | 557,000,000 | 55,700,000 | 501,300,000 |
| | | | 101동 606호 | 255,860,880 | 305,139,120 | 561,000,000 | 56,100,000 | 504,900,000 |
| | | | 101동 607호 | 255,860,880 | 305,139,120 | 561,000,000 | 56,100,000 | 504,900,000 |
| | | | 101동 706호 | 257,685,200 | 307,314,800 | 565,000,000 | 56,500,000 | 508,500,000 |
| | | | 101동 707호 | 257,685,200 | 307,314,800 | 565,000,000 | 56,500,000 | 508,500,000 |
| | | | 101동 806호 | 259,509,520 | 309,490,480 | 569,000,000 | 56,900,000 | 512,100,000 |
| | | | 101동 807호 | 259,509,520 | 309,490,480 | 569,000,000 | 56,900,000 | 512,100,000 |
| | | | 101동 906호 | 261,333,840 | 311,666,160 | 573,000,000 | 57,300,000 | 515,700,000 |
| | | | 101동 907호 | 261,333,840 | 311,666,160 | 573,000,000 | 57,300,000 | 515,700,000 |
| | | | 101동 1006호 | 263,158,160 | 313,841,840 | 577,000,000 | 57,700,000 | 519,300,000 |
| | | | 101동 1007호 | 263,158,160 | 313,841,840 | 577,000,000 | 57,700,000 | 519,300,000 |
| | | | 101동 1106호 | 264,982,480 | 316,017,520 | 581,000,000 | 58,100,000 | 522,900,000 |
| | | | 101동 1107호 | 264,982,480 | 316,017,520 | 581,000,000 | 58,100,000 | 522,900,000 |
| | | | 101동 1206호 | 266,806,800 | 318,193,200 | 585,000,000 | 58,500,000 | 526,500,000 |
| | | | 101동 1207호 | 266,806,800 | 318,193,200 | 585,000,000 | 58,500,000 | 526,500,000 |
| | | | 101동 1306호 | 268,631,120 | 320,368,880 | 589,000,000 | 58,900,000 | 530,100,000 |
| | | | 101동 1307호 | 268,631,120 | 320,368,880 | 589,000,000 | 58,900,000 | 530,100,000 |
| 70B | 070.5600B | 24 | 101동 202호 | 256,773,040 | 306,226,960 | 563,000,000 | 56,300,000 | 506,700,000 |
| | | | 101동 203호 | 238,529,840 | 284,470,160 | 523,000,000 | 52,300,000 | 470,700,000 |
| | | | 101동 302호 | 249,475,760 | 297,524,240 | 547,000,000 | 54,700,000 | 492,300,000 |
| | | | 101동 303호 | 240,354,160 | 286,645,840 | 527,000,000 | 52,700,000 | 474,300,000 |
| | | | 101동 402호 | 251,300,080 | 299,699,920 | 551,000,000 | 55,100,000 | 495,900,000 |
| | | | 101동 403호 | 242,178,480 | 288,821,520 | 531,000,000 | 53,100,000 | 477,900,000 |
| | | | 101동 502호 | 253,124,400 | 301,875,600 | 555,000,000 | 55,500,000 | 499,500,000 |
| | | | 101동 503호 | 244,002,800 | 290,997,200 | 535,000,000 | 53,500,000 | 481,500,000 |
| | | | 101동 602호 | 254,948,720 | 304,051,280 | 559,000,000 | 55,900,000 | 503,100,000 |
| | | | 101동 603호 | 245,827,120 | 293,172,880 | 539,000,000 | 53,900,000 | 485,100,000 |
| | | | 101동 702호 | 256,773,040 | 306,226,960 | 563,000,000 | 56,300,000 | 506,700,000 |
| | | | 101동 703호 | 247,651,440 | 295,348,560 | 543,000,000 | 54,300,000 | 488,700,000 |
| | | | 101동 802호 | 258,597,360 | 308,402,640 | 567,000,000 | 56,700,000 | 510,300,000 |
| | | | 101동 803호 | 249,475,760 | 297,524,240 | 547,000,000 | 54,700,000 | 492,300,000 |
| | | | 101동 902호 | 260,421,680 | 310,578,320 | 571,000,000 | 57,100,000 | 513,900,000 |
| | | | 101동 903호 | 251,300,080 | 299,699,920 | 551,000,000 | 55,100,000 | 495,900,000 |
| | | | 101동 1002호 | 262,246,000 | 312,754,000 | 575,000,000 | 57,500,000 | 517,500,000 |
| | | | 101동 1003호 | 253,124,400 | 301,875,600 | 555,000,000 | 55,500,000 | 499,500,000 |
| | | | 101동 1102호 | 264,070,320 | 314,929,680 | 579,000,000 | 57,900,000 | 521,100,000 |
| | | | 101동 1103호 | 254,948,720 | 304,051,280 | 559,000,000 | 55,900,000 | 503,100,000 |
| | | | 101동 1202호 | 265,894,640 | 317,105,360 | 583,000,000 | 58,300,000 | 524,700,000 |
| | | | 101동 1203호 | 256,773,040 | 306,226,960 | 563,000,000 | 56,300,000 | 506,700,000 |
| | | | 101동 1302호 | 267,718,960 | 319,281,040 | 587,000,000 | 58,700,000 | 528,300,000 |
| | | | 101동 1303호 | 258,597,360 | 308,402,640 | 567,000,000 | 56,700,000 | 510,300,000 |

| | | | | | | | | |
|--|--|--|------------|-------------|-------------|-------------|------------|-------------|
| | | | 102동 404호 | 268,175,040 | 319,824,960 | 588,000,000 | 58,800,000 | 529,200,000 |
| | | | 102동 504호 | 260,877,760 | 311,122,240 | 572,000,000 | 57,200,000 | 514,800,000 |
| | | | 102동 604호 | 262,702,080 | 313,297,920 | 576,000,000 | 57,600,000 | 518,400,000 |
| | | | 102동 704호 | 264,526,400 | 315,473,600 | 580,000,000 | 58,000,000 | 522,000,000 |
| | | | 102동 804호 | 266,350,720 | 317,649,280 | 584,000,000 | 58,400,000 | 525,600,000 |
| | | | 102동 904호 | 268,175,040 | 319,824,960 | 588,000,000 | 58,800,000 | 529,200,000 |
| | | | 102동 1004호 | 269,999,360 | 322,000,640 | 592,000,000 | 59,200,000 | 532,800,000 |
| | | | 102동 1104호 | 271,823,680 | 324,176,320 | 596,000,000 | 59,600,000 | 536,400,000 |
| | | | 102동 1204호 | 273,648,000 | 326,352,000 | 600,000,000 | 60,000,000 | 540,000,000 |
| | | | 101동 201호 | 274,104,080 | 326,895,920 | 601,000,000 | 60,100,000 | 540,900,000 |
| | | | 101동 208호 | 274,104,080 | 326,895,920 | 601,000,000 | 60,100,000 | 540,900,000 |
| | | | 101동 301호 | 266,806,800 | 318,193,200 | 585,000,000 | 58,500,000 | 526,500,000 |
| | | | 101동 308호 | 266,806,800 | 318,193,200 | 585,000,000 | 58,500,000 | 526,500,000 |
| | | | 101동 401호 | 268,631,120 | 320,368,880 | 589,000,000 | 58,900,000 | 530,100,000 |
| | | | 101동 408호 | 268,631,120 | 320,368,880 | 589,000,000 | 58,900,000 | 530,100,000 |
| | | | 101동 501호 | 270,455,440 | 322,544,560 | 593,000,000 | 59,300,000 | 533,700,000 |
| | | | 101동 508호 | 270,455,440 | 322,544,560 | 593,000,000 | 59,300,000 | 533,700,000 |
| | | | 101동 601호 | 272,279,760 | 324,720,240 | 597,000,000 | 59,700,000 | 537,300,000 |
| | | | 101동 608호 | 272,279,760 | 324,720,240 | 597,000,000 | 59,700,000 | 537,300,000 |
| | | | 101동 701호 | 274,104,080 | 326,895,920 | 601,000,000 | 60,100,000 | 540,900,000 |
| | | | 101동 708호 | 274,104,080 | 326,895,920 | 601,000,000 | 60,100,000 | 540,900,000 |
| | | | 101동 801호 | 275,928,400 | 329,071,600 | 605,000,000 | 60,500,000 | 544,500,000 |
| | | | 101동 808호 | 275,928,400 | 329,071,600 | 605,000,000 | 60,500,000 | 544,500,000 |
| | | | 101동 901호 | 277,752,720 | 331,247,280 | 609,000,000 | 60,900,000 | 548,100,000 |
| | | | 101동 908호 | 277,752,720 | 331,247,280 | 609,000,000 | 60,900,000 | 548,100,000 |
| | | | 101동 1001호 | 279,577,040 | 333,422,960 | 613,000,000 | 61,300,000 | 551,700,000 |
| | | | 101동 1008호 | 279,577,040 | 333,422,960 | 613,000,000 | 61,300,000 | 551,700,000 |
| | | | 101동 1101호 | 281,401,360 | 335,598,640 | 617,000,000 | 61,700,000 | 555,300,000 |
| | | | 101동 1108호 | 281,401,360 | 335,598,640 | 617,000,000 | 61,700,000 | 555,300,000 |
| | | | 101동 1201호 | 283,225,680 | 337,774,320 | 621,000,000 | 62,100,000 | 558,900,000 |
| | | | 101동 1208호 | 283,225,680 | 337,774,320 | 621,000,000 | 62,100,000 | 558,900,000 |
| | | | 101동 1301호 | 285,050,000 | 339,950,000 | 625,000,000 | 62,500,000 | 562,500,000 |
| | | | 101동 1308호 | 285,050,000 | 339,950,000 | 625,000,000 | 62,500,000 | 562,500,000 |
| | | | 102동 403호 | 277,752,720 | 331,247,280 | 609,000,000 | 60,900,000 | 548,100,000 |
| | | | 102동 503호 | 270,455,440 | 322,544,560 | 593,000,000 | 59,300,000 | 533,700,000 |
| | | | 102동 603호 | 272,279,760 | 324,720,240 | 597,000,000 | 59,700,000 | 537,300,000 |
| | | | 102동 703호 | 274,104,080 | 326,895,920 | 601,000,000 | 60,100,000 | 540,900,000 |
| | | | 102동 803호 | 275,928,400 | 329,071,600 | 605,000,000 | 60,500,000 | 544,500,000 |
| | | | 102동 903호 | 277,752,720 | 331,247,280 | 609,000,000 | 60,900,000 | 548,100,000 |
| | | | 102동 1003호 | 279,577,040 | 333,422,960 | 613,000,000 | 61,300,000 | 551,700,000 |
| | | | 102동 1103호 | 281,401,360 | 335,598,640 | 617,000,000 | 61,700,000 | 555,300,000 |
| | | | 102동 1203호 | 283,225,680 | 337,774,320 | 621,000,000 | 62,100,000 | 558,900,000 |

| | | | | | | | | |
|-----|-----------|----|------------|-------------|-------------|-------------|------------|-------------|
| 75F | 075.6000F | 24 | 101동 204호 | 256,316,960 | 305,683,040 | 562,000,000 | 56,200,000 | 505,800,000 |
| | | | 101동 205호 | 256,316,960 | 305,683,040 | 562,000,000 | 56,200,000 | 505,800,000 |
| | | | 101동 304호 | 258,141,280 | 307,858,720 | 566,000,000 | 56,600,000 | 509,400,000 |
| | | | 101동 305호 | 258,141,280 | 307,858,720 | 566,000,000 | 56,600,000 | 509,400,000 |
| | | | 101동 404호 | 259,965,600 | 310,034,400 | 570,000,000 | 57,000,000 | 513,000,000 |
| | | | 101동 405호 | 259,965,600 | 310,034,400 | 570,000,000 | 57,000,000 | 513,000,000 |
| | | | 101동 504호 | 261,789,920 | 312,210,080 | 574,000,000 | 57,400,000 | 516,600,000 |
| | | | 101동 505호 | 261,789,920 | 312,210,080 | 574,000,000 | 57,400,000 | 516,600,000 |
| | | | 101동 604호 | 263,614,240 | 314,385,760 | 578,000,000 | 57,800,000 | 520,200,000 |
| | | | 101동 605호 | 263,614,240 | 314,385,760 | 578,000,000 | 57,800,000 | 520,200,000 |
| | | | 101동 704호 | 265,438,560 | 316,561,440 | 582,000,000 | 58,200,000 | 523,800,000 |
| | | | 101동 705호 | 265,438,560 | 316,561,440 | 582,000,000 | 58,200,000 | 523,800,000 |
| | | | 101동 804호 | 267,262,880 | 318,737,120 | 586,000,000 | 58,600,000 | 527,400,000 |
| | | | 101동 805호 | 267,262,880 | 318,737,120 | 586,000,000 | 58,600,000 | 527,400,000 |
| | | | 101동 904호 | 269,087,200 | 320,912,800 | 590,000,000 | 59,000,000 | 531,000,000 |
| | | | 101동 905호 | 269,087,200 | 320,912,800 | 590,000,000 | 59,000,000 | 531,000,000 |
| | | | 101동 1004호 | 270,911,520 | 323,088,480 | 594,000,000 | 59,400,000 | 534,600,000 |
| | | | 101동 1005호 | 270,911,520 | 323,088,480 | 594,000,000 | 59,400,000 | 534,600,000 |
| | | | 101동 1104호 | 272,735,840 | 325,264,160 | 598,000,000 | 59,800,000 | 538,200,000 |
| | | | 101동 1105호 | 272,735,840 | 325,264,160 | 598,000,000 | 59,800,000 | 538,200,000 |
| | | | 101동 1204호 | 274,560,160 | 327,439,840 | 602,000,000 | 60,200,000 | 541,800,000 |
| | | | 101동 1205호 | 274,560,160 | 327,439,840 | 602,000,000 | 60,200,000 | 541,800,000 |
| | | | 101동 1304호 | 276,384,480 | 329,615,520 | 606,000,000 | 60,600,000 | 545,400,000 |
| | | | 101동 1305호 | 276,384,480 | 329,615,520 | 606,000,000 | 60,600,000 | 545,400,000 |
| 76G | 076.7900G | 9 | 102동 402호 | 280,945,280 | 335,054,720 | 616,000,000 | 61,600,000 | 554,400,000 |
| | | | 102동 502호 | 273,648,000 | 326,352,000 | 600,000,000 | 60,000,000 | 540,000,000 |
| | | | 102동 602호 | 275,472,320 | 328,527,680 | 604,000,000 | 60,400,000 | 543,600,000 |
| | | | 102동 702호 | 277,296,640 | 330,703,360 | 608,000,000 | 60,800,000 | 547,200,000 |
| | | | 102동 802호 | 279,120,960 | 332,879,040 | 612,000,000 | 61,200,000 | 550,800,000 |
| | | | 102동 902호 | 280,945,280 | 335,054,720 | 616,000,000 | 61,600,000 | 554,400,000 |
| | | | 102동 1002호 | 282,769,600 | 337,230,400 | 620,000,000 | 62,000,000 | 558,000,000 |
| | | | 102동 1102호 | 284,593,920 | 339,406,080 | 624,000,000 | 62,400,000 | 561,600,000 |
| | | | 102동 1202호 | 286,418,240 | 341,581,760 | 628,000,000 | 62,800,000 | 565,200,000 |
| 84H | 084.8500H | 9 | 102동 401호 | 306,485,760 | 365,514,240 | 672,000,000 | 67,200,000 | 604,800,000 |
| | | | 102동 501호 | 299,188,480 | 356,811,520 | 656,000,000 | 65,600,000 | 590,400,000 |
| | | | 102동 601호 | 301,012,800 | 358,987,200 | 660,000,000 | 66,000,000 | 594,000,000 |
| | | | 102동 701호 | 302,837,120 | 361,162,880 | 664,000,000 | 66,400,000 | 597,600,000 |
| | | | 102동 801호 | 304,661,440 | 363,338,560 | 668,000,000 | 66,800,000 | 601,200,000 |
| | | | 102동 901호 | 306,485,760 | 365,514,240 | 672,000,000 | 67,200,000 | 604,800,000 |
| | | | 102동 1001호 | 308,310,080 | 367,689,920 | 676,000,000 | 67,600,000 | 608,400,000 |
| | | | 102동 1101호 | 310,134,400 | 369,865,600 | 680,000,000 | 68,000,000 | 612,000,000 |
| | | | 102동 1201호 | 311,958,720 | 372,041,280 | 684,000,000 | 68,400,000 | 615,600,000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며, 기타 추가 품목과 관련된 사항은 공고문 아래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공통사항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년 02월 22일 사용검사가 완료된 아파트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금액이 미포함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기기자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옵션옵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용검사(2022.02.22)된 후 분양 아파트이므로 마이너스 옵션제를 실시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준공된 세대이므로 세대의 기시공된 기본옵션, 플러스 옵션 등 모든 내부여건을 피악하고 계약해야 하며, 기시공된 사항에 대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변경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정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위 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의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총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함.(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본 아파트는 사용검사(2022.02.22)된 아파트로써 잔금 대출을 사업주체에서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금 및 잔금은 상기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에 따라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 함.(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신용문제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청약 접수를 받아 동·호수를 추첨함.
- 당첨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대화상의 착오로 인해 응답하지 않음.
- 매수자는 본 표시 자신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매수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구분(약식 표기) | 70A | 70B | 73C | 74D | 74E | 75F | 76G | 84H | 합계 |
|---------------|-------------------|-----|-----|-----|-----|-----|-----|-----|----|
| 일반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등 | 1 | - | 1 | - | 1 | - | - | 13 |
| | 장애인(경기도) | 1 | - | - | 1 | - | 1 | - |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1 | - | 1 | - | - | - | |
| | 10년이상복무군인 | - | 1 | - | - | 1 | - | - | |
|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 중소기업 근로자 | - | - | 1 | - | - | 1 | - | 1 |
| | 부천시 및 경기도거주자(50%) | 1 | 1 | 1 | 1 | 1 | 1 | 1 | 8 |
| | 수도권 거주자(50%) | 1 | 1 | 1 | 1 | - | - | - | 5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6 | 6 | 1 | 4 | 3 | 4 | 1 | 26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 - | - | 2 | - | 2 | - | 4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3 | 3 | - | 3 | - | 4 | - | 13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 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II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무주택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종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급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p> <p>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 | | | | | | | | | | | | | | | | | | | |
| 청약자격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기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기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기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기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기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기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기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내 용 요건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 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 | | | | | | | | | | | | | | |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국가유공자), 3호(국가보훈대상자), 8호(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장애인,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기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경기동부 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근로자 :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당첨자 선정방법 [참고]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디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기입하여 청약통장 기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기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신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기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지에게 우선공급(경기도내에 경쟁시 부천시 1년 이상 계속거주자가 우선함)하며, 나머지 50%(우선공급에서 미달된 주택을 포함)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평점요소 | 총배 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 | | 5년 이상~10년 미만 | 15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볼)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1년 이상~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볼)로서 수도권 해당 시·도 거주기간(5)(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 | | 5년 이상~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5년 미만 | 5 | |
| 입주자 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기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기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기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기입확인서로 확인

-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싱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정 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제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2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기입하여 청약통장 기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기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입신의 경우 입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천양자의 경우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입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입신 지속 시 입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입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입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자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피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 취소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분양권전매 요청 시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전매 요청을 접수합니다.]
 - 자녀수 산정 시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 하여 산정합니다.
 - 입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자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자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입신부부의 입신상태가 입주자정 개시일까지 지속 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자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입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피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기구원수별 기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단, 신혼부부 중 한사람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기액기준(3억 3,1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 세대에만 해당하며, 4명 이상 세대는 기구원수별 기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합니다.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을 포함하나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소형 · 저기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소형 · 저기주택등' 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기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입신 종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종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 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입신 종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生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증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 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입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수 전 파기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기구원수별 기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공급유형 | |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소득 기준 구분 |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이하 | ~6,208,934원 | ~7,200,809원 | ~7,326,072원 | ~7,779,825원 | ~8,233,578원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초과 ~ 120%이하 | 6,208,935원~ 7,450,721원 | 7,200,810원~ 8,640,971원 | 7,326,073원~ 8,791,286원 | 7,779,826원~ 9,335,790원 | 8,233,579원~ 9,880,294원 |
| 일반공급 (기준소 득, 2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 ~ 140%이하 | 6,208,935원~ 8,692,508원 | 7,200,810원~ 10,081,133원 | 7,326,073원~ 10,256,501원 | 7,779,826원~ 10,891,755원 | 8,233,579원~ 11,527,009원 | 8,687,332원~ 12,162,263원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 ~ 160%이하 | 7,450,722원~ 9,934,294원 | 8,640,972원~ 11,521,294원 | 8,791,287원~ 11,721,715원 | 9,335,791원~ 12,447,720원 | 9,880,295원~ 13,173,725원 |
| 소득기준 초과/자산기준 총액 (추첨제, 3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40%초과, 부동산기액(3.31 억원)총액 | 8,692509원~ | 10,081,134원~ | 10,256,502원~ | 10,891,756원~ | 11,527,010원~ | 12,162,264원~ |
| | | 160% 초과, 부동산기액(3.31 억원) 총액 |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99,731원~ |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
기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기구 소득기준 → 8인 기구원수별 기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기구원수

※ 기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본 밀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 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지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기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별표3)

1. 군 복무중 이어서 건강(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 군 복무 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피와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기입 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청부하여 소득 증빙서류로 준용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4.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통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6.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여,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자산 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 내역 | | | | | | | | | | | |
|--------------------|---------------------|----------------------------------|---|--------|--|------------|----|--------------------|---------------|--|------|----------------------------------|--|
| 부동산 (건물+ 토지) | 3억 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 <td></td><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 <td></td><td>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body> </table>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주택 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토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일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협회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협회중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증증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 | | | | |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4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기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기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기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부천시 1년이상 계속한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기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기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기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3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오건 총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있는 자녀들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혼자서 살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

예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미혼인 공급신청자 + 어머니(직계존속)등재 : 평형상관없음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미혼인 공급신청자(단독세대)만 등재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기구원수별 기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 기액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기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률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입주자저축에 기입하여 청약통장 기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기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 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 세대에만 해당하며, 4명 이상 세대는 기구원수별 기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합니다.

※ 청약자가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을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

※ 소득세 납부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특히,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함. 단, 5년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사업자로써 아닌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을 부여합니다.

- 소형, 저기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기구원수별 기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공급유형 | 구분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기구원수별 기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소득 기준 구분 |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 130%이하 | ~8,071,614원 | ~9,361,052원 | ~9,523,894원 | ~10,113,773원 | ~10,703,651원 | ~11,293,530원 |
| |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 130% 초과 ~ 160% 이하 | 8,071,615원 ~9,934,294원 | 9,361,053원 ~11,521,294원 | 9,523,895원 ~11,721,715원 | 10,113,774원 ~12,447,720원 | 10,703,652원 ~13,173,725원 | 11,293,531원 ~13,899,730원 |
| 추첨제 (30%)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99,731원 |
| | 1인 가구 | 160%이하 | ~9,934,294원 | ~11,521,294원 | ~11,721,715원 | ~12,447,720원 | ~13,173,725원 | ~13,899,730원 |
| |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99,731원 | |

※ 9인 이상 기구 소득기준 → 8인 기구원수별 기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기구원수

※ 기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밀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기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1인 기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자산 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 내역 | | | | |
|-------------|---------------|--------------|---|---|--|--|
| | |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자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 3,100만원 이하 | |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주택 외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 3,100만원 이하 |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거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5항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부천시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에 거주(외국에 거주한 기간 제외)한 신청자가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인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수도권 거주자로 인정되어 본 주택의 해당 순위 (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시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기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
| 민영주택 | 1순위 | 전용 85㎡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75%) / 추첨제(25%)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 2순위 | 전 주택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에 ·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제19조제4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일을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 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을 명확히 확인 후 신청하여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오류로 인한 부적격 처리, 당첨위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함.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 대상자 | 신청 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2022.03.17.(목) (청약홈 인터넷 : 09:00~17:3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홍보관 |
| 일반공급 | 1순위(해당지역) (부천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 2022.03.18.(금) 09:00~17:30 (해당지역)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 | 1순위(기타지역) | 2022.03.21.(월) 09:00~17:30 (기타지역)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 | 2순위 | 2022.03.22.(화) 09:00~17:30 | |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홍보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 '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홍보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 시】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스마트폰 청약 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업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준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구분 | | 구비사항 | |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
| | 인감증명 방식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제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제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제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제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제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제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 | |
| | | | |
| |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원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입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구비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지) | | | |
| 공통서류 | 0 |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 | · 당시 홍보관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인터넷청약(청약홈 www.appla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0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본인 | · 주택공급신청서(본인발급용) |
| | 0 | |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 | 0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제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 | 0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0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0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0 |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 청약통장 기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서비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a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인터넷청약(청약홈 www.appla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0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 |
| | 0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0 | |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존속 |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

| | | | | |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0 | 주민등록표 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 | 0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 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별과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 |
| | 0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 |
| | 0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0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혼, 이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0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 | 0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6세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0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0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 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0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0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0 | 자격요건 확인서 | 본인 |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당시 견본주택 비치) |
| | 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제2호기준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 | 0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0 | 입양관계 증명서 |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 0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
| | 0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 | 0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록대조일 : 2020.1.1일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 | 0 | 소득증빙서류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표1] 참조)※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제출 |
| | 0 | 비사업자 확인각서 |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 | 0 | 사실 증명 |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 | 0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0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배우자 및 직계존·비 속 |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 | | | |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0 | 자격요건 확인서 | 본인 |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당사 견본주택 비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 | 0 | 소득세 입증서류(납부내역증명서 등) | | |
| | 0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록대조일 : 2020.1.1일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 | 0 | 소득증빙서류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제출※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경우에만 기구원수에 포함. |
| | 0 | 비사업자 확인각서 |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 | 0 | 사실 증명 |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 | 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제출가정에서 배우자의 전 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 | 0 | 입양관계 증명서 | |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 0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이상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 | 0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기구원수에 포함하여 소득산정시 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여부를확인하기 위한 경우 (1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0 | 부동산소유현황 | |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ri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0 |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 | 배우자 및 직계존·비 속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 | 0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 본인 |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꼭히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만 인정함. * 장애인 복지카드 등 기타 서류로 접수 불가 |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 | | 위임장 | 청약자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시 홍보관에 비치 |
| |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 제2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신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신청시 신청자의 학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학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입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 기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 구분 | 내용 |
|----------------------|--|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옵션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 11. 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신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 직계비속 및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에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관련 내용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기혼자(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p>*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p>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 |
| | | 3명 | 20 |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6년 미만 | 17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본인 청약기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 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구분 | 선정방법 |
|----------------------|---|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디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 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신청자가 부천시 1년 미만 및 기타 수도권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2순위에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홍보관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홍보관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홍보관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 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 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 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지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 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 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책임으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긴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V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구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당첨자 서류제출 및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 계약체결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주전), 다자녀기구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2.03.28.(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2.03.28.(월)~2022.04.07.(목) /10:00~17:00 • 장소 :당사 홍보관(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316 분양사무실) - 특별공급 당첨자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및 계약체결 서류 지참 - 1, 2순위 당첨자 : 계약체결 서류 지참 ※ 계약체결일에 계약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정이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
| 일반공급 | 1순위 2순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04.08.(금)~2022.04.12.(화) / 10:00~17:00 • 장소 :당사 홍보관(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316 분양사무실) <p>※ 방문에 약제 운영</p>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기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척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 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홍보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 문의는 척도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나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 문의는 척도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나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구분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전 은행 청약자) | |
| 이용기간 | - 2022.03.28.(월) ~ 2022.04.06.(수) (10일간) | |
| 인터넷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인 터 넷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p>※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p> |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제공일시 | - 2022.03.28.(월) 08:00(제공시간은 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
|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 2-1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 2-2 제2조제7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 나. 분양권 등을 중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 3. 그밖에 주택 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 다. 소유자의 「기존관례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 4.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원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 5.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속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6.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 7.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기력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2.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기력에서 제외함. |
| 8.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결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2.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 9.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9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 10. 소형·저기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 11.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VII 추가 품목 계약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는 사용검사(2022.02.22)된 아파트로써 마이너스 옵션제를 실시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아파트는 전체 세대 밸코니 확장설치는 필수사항이며, 분양기에 포함된 금액이며, 기타 옵션은 선택사항임. ■ 추가 품목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이며 추가품목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임. ■ 추가 품목의 계약내용, 납부일정 및 납부계좌, 제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홍보판에서 확인하기 바람. ■ 밸코니 확장범위는 세대별로 상이하며 같은 타입의 주택형 이라고 하더라도, 밸코니 입면 변화 및 창호크기 및 위치, 층수 등의 차이로 서비스 면적과 채광 및 환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밸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된 세대이므로 세대의 기시공된 기본옵션, 플러스 옵션 등 모든 내부 여건을 파악하고 계약해야 하며, 기시공된 사항에 대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변경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밸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밸코니 확장에 따른 낭비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밸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배선기구 위치, 조명기구 위치 등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밸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밸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기준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기구, 주방 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나, 본 아파트는 사용검사(2022.02.22)된 아파트로써 마이너스옵션제를 실시 할 수 없으며, 계약시 기시공된 모든 내부 여건을 파악하고 계약해야 하며, 기시공된 사항에 대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변경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VIII 단지 여건 사항

*준공한 단지이므로 준공 도면과 단지 주변의 여건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설계 유의사항

(1) 공통사항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2)로 표기하였으나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방법 : 주택형별 면적(m^2) × 0.3025]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균형생활시설의 대지 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협오시설의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개발계획 등을 확인하시기 바이며, 시설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도로에서 단지 내로 연결되는 외부 계단 및 램프는 본 공사 시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필요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인접 지역의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시 먼지,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공원, 녹지, 도로 등은 현재 상황 및 설치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공사의 범위가 아닙니다.
- 단지 내 · 외부 명칭 및 등 · 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 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부지 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은 증감이 발생하여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일부 세대는 본 공사 시행 중에 분양 등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관경 및 기준개수 등 소화시설물의 기준은 관계법령 및 수리계산에 의해 본 공사시 설계도면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2020년 08월 03일 사업시행인가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주변인들에게 상시 개방 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계약자 및 입주자는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미감재

- 미감자재는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미감자재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기사공된 세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홍보물

- 분양 홍보물(카탈로그, 팜플렛, 홈페이지, 사이버 모델하우스)상 제시된 세대 확장형 및 선택형을 제외한 발코니 각 공간별 확장 유/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적용되는 미감재의 범위는 사이버 모델하우스의 현관문을 경계로 세대 내부에 한합니다.
- 단지 모형의 외벽마감 및 색채, 조경, 식재, 시설물, 주변 환경 및 대지레벨, 보도선형, 시설물의 위치, 동간거리, 도로 폭, 식재, 주변 응벽높이, 방음벽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설계 관련 주요 고지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상이한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홍보관에 비치된 사업승인도서 및 착공도서를 반드시 열람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 · 외, 공용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건축계획 및 조경계획의 변경(분양 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등의 부분에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동부분의 면적(계단실, 코아,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은 전용면적 비율로 계산되어 분배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주거 공동부분 각 층의 공동 흡, 복도, 세대 전실 등)은 주거 공동부분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불법구조 변경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 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하부 PIT높이 및 비내력벽의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 배치로 형별, 등별, 층별,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전동, 통풍,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AMR)가 설치되며, 「도시가스공급규정」제13조제5항에 의거하여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축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커뮤니티시설, 층고,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시설물(수목, 시설물, 조경 시설, 포장, 기부채납 구간 등), 단지 레벨차에 따른 응벽(조경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에 따라 도로 경사도 및 도로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존 건축물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응벽 및 조경식 구간의 계획안이 일부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에는 담장 및 경계펜스가 시공되며, 주/부출입구를 제외한 소형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의 통행 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건축물 외관(지붕, 육탑, 전 · 후면 외관, 외벽, 측벽, 필로티(캐노피 등), 부대복리시설,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 난간의 디테일 및 높이, D · A 급/베기창, 실외기실 형태, 문주, 응벽, 주차장램프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외부색채는 시공사의 색채 기준 변경, 인 · 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변경 조정될 수 있으며, 디자인을 위한 출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조경시설,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불빛, 분진에 의한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벽과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파뢰침, 태양광 패널 등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는 조명 및 빛의 신란 등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데크의 형태 및 일면(응벽, 지하주차장 외벽, 부대복리시설 일면 포함), 데크 상부 난간제작,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와의 데크의 수직면 및 인접 대지와의 레벨차에 따른 응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부 출입구 및 동 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태(외관, 평면) 등이 동별로 크기, 방식이 상이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공동부분(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상이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공동홀 계단실의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안허가 조건에 따라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며,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창호는 화재 시 연기유입을 막기 위한 공기 기압을 위해 자동으로 닫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소방도로, 보행 도로변에 인접한 세대는 생활침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우 · 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검토 결과에 따라 본 공사 시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 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결로는 생활습관에 따라 커질 수 있으므로 확장 및 비확장 공간 등은 입주자 스스로 주기적인 실내 흐리를 통하여 결로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 동 필로티 내 제연필름 또는 그릴창이 설치되는 경우, 인접한 세대는 진동 및 소음, 분진, 악취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등의 경우, 주행차량과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자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 · 외 도로 등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은 건물에 매립되어 설치되며,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가 인접한 일부 세대의 침실 및 최상층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과 연결된 층수 및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 및 방향은 동별로 상이하므로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한 도로 및 지상주차장을 제외한 단지 내 차로는 비상용 차량의 통행을 위한 것입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을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밸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통행로 등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경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시설 위치, 자연석 쌓기 등을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설계도면과 달리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환기시스템 등으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열기 등에 의해 생활환경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아파트 주/부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층 또는 일부 세대의 경우 입주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이후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은 불가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본 건축물은 건축구조 설계기준에 따른 내진등급이 적용됩니다.
- 쓰레기 집적장 설치 위치에 따라 동·호수별 이동거리가 상이할 수 있으며, 쓰레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소음,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생활피해가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지상층 출입이 상이하므로 홍보판에 설치되는 모형 및 설계도면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보행 동선상에 설치되는 계단, 외부 엘리베이터, 장애인 램프 등의 배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식은 법적 기준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방습벽은 벽체 배수판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관련 권리사무소, 기계전기실, 용원실 등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아파트에 설치된 시설을 함께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정화조가 설치되어 정화조 배기탑 최상층으로 배기되어 이에 따른 가주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 인입을 위한 전주, 맨홀 신설로 인해 미관 및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변압기, 발전기 기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매연, 진동으로 인해 생활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부대시설 : 주차장, 주택단지 내 도로, 경비실, 안내표지판, 폐기물보관시설(쓰레기 집적장), 자전거보관대, 보안등, 정화조
- 복리시설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부 복리시설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며 그 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공동장소인 휴게공간과 필터터, 부대복리시설, D·A(기계실, 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정화조, 쓰레기 분리수거함, 관리동, 각종 장식물, 조경시설, 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시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반비용은 「동법 제45조」에 의거하여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냉·난방 실외기가 설치될 경우, 근접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권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권리보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6) 단지 지하주차장

- 법정 주차 아파트 144, 운동시설 6, 근린생활시설 7 총 151대를 초과한 총 161대 설치(지상주차장 38대, 지하주차장 123대)
- 주차램프 신출표

| 구분 | | 산출식 | 총고 |
|-----|-------|-----------------------------------|-------|
| IN | ①직선램프 | (H)3.40MX17%=20.00M≤20.00M이므로 O.K | 3.40M |
| OUT | ②직선램프 | (H)3.40MX17%=20.00M≤20.00M이므로 O.K | 3.40M |

- 지하주차장 진입 시, 차량의 높이는 2.3m로 제한되며, 2.3m를 초과하는 탑차(택배운송 등)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반상태 및 인근 건축물과의 관계 등에 의해 계획안(주차장 층고, 주차동선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단, 주차대수의 감소는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공용시설로 특정위치 사용에 따른 전용지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진행 시 확장형 주차비율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구조 형식상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 등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및 지하 동 출입구는 구조검토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일부 주차면은 기둥과 간섭되어 승·하차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여건에 따라 PC판넬 또는 철제 데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및 배관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입주 후 주민자치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 동별 주차영역이 한정될 수 있으므로 '매수지'는 주차장의 사용에 대한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의 일반형 주차구획 너비(2.3m×5.0m)(확장형 2.5m×5.1m)로 설치됩니다. 또한, 일부 주차는 확장형 또는 경형주차로 설치됩니다.

- 본 단지의 주차장은 지상 1층(38대), 지하 2개층(123세대)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출입구가 계획되어 주차장 이용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계약 시 주차출입 및 지상, 지하 주차 가능여부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7) 세대 공통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도어의 손끼임 방지 의무화로 거실에 면한 도어에 시공되며, 본 공사 시 장치의 디자인 및 재질 등 상세는 홍보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손끼임 방지 장치는 사용에 따라 접착면의 탈락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하자가 아니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세대의 안목치수는 세대 내에 시공되는 인테리어 미감재의 미감 두께에 따라 설계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대 대청형 타입의 경우, 분양홍보물의 일부 각 실(현관, 거실, 안방, 침실, 주방, 욕실,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 공간)의 향,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호수, 세대 배치, 코아 형태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발이는 본 시공 시 하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사용예정인 대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 세대 내 계약자가 사용 또는 사용예정인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의 크기에 따라 돌출 정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복도장, 주방기구, 각 실 불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미감자재는 세대 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계약바랍니다.
- 현관 디딤석, 욕실전단이, 주방 상판등의 석재는 자재의 특성상 디딤 폭, 무늬, 색깔, 나누기 등이 사이버 모델하우스와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시공 편의성을 위해 분절 시공됩니다.
- 티월줄눈 위치 및 각 악세사리 위치는 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시 확인 후 체결 바랍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배기머트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기구 및 선반의 구조가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형태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다용도실의 창호 위치는 수납기구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기구, 욕실장 등) 설치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미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기구(장롱, 불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편리 실증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미감, 단열재의 두께 등의 차이로 카탈로그 및 기타 인쇄물에 표기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 욕실 출입문(부부, 공동)은 본 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되며, 문짝모서리 상·하부는 별도의 미감이 없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발코니 단자는 바닥 구به 시공으로 인해 사이버 모델하우스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남김을 방지하기 위한 시공계획으로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없으며, 문 개폐 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욕실도기, 위생기구 및 수전 등 부착물의 위치는 본 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기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와 같은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개수대 하부에 설치되는 은수분배기는 본 공사 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해 해당 일부 주방기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배선기기(스위치, Outlet 등), 통신 단자함, 세대 분합문의 위치, 수량, 사양 등을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따르며, 본 공사 시 위치, 사양,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 실외기실, 안방 분합문을 제외한 외부창호에는 기본 방충망이 설치됩니다.
- 세대 현관 및 대피공간 방화문은 본 공사 시 방화성능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미감자재(수전 및 악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미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마루자재는 스텁첨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 시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됩니다.
- 본 아파트는 세대 보일러에 의한 개별 바닥 난방이 적용됩니다.

(8) 세대 발코니/실외기실

- 각 주택형별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이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민원 발생 시 보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겨울철 실내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므로 각 세대에 설치된 휙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시면 환기 시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확장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미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스프링클러 위치, 세대 간 미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호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 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우천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나 보일러가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 낙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바닥 배수가 필요한 공간(욕상, 필로티, 욕실, 발코니 등)의 바닥 높낮이는 본 공사시 사이버 모델하우스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혹은 실외기실에는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냉매배관(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시)이 노출 설치되어, 에어컨 가동 및 우천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혹은 실외기실 천정에는 전열교환기 및 연결 브릿가 노출되어 설치되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계약 후 기본형 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발코니 난간의 높이, 새시의 설치 유/무, 형태, 재질 등은 같은 타입의 단위세대라 하더라도 동별, 층수, 형별 및 위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 있는 발코니 새시는 사업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 세대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새시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미감재가 설치되며(대피소 및 실외기실은 제외) 설치 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실외기실의 크기, 형태(독립형, 오픈형)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장비배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본 공사 시 실외기실 도어 크기 및 개폐방향은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 사이즈에 따라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 출입문은 겹집 방화문으로 시공됩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내·외부의 기온차에 의해서 내부에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하자가 아니오니 이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창호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된 모든 창호(난간 포함)의 형태, 재질, 색상과 하부에 높이, 난간대 설치 여부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사이버 모델하우스의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훌 공용부 창은 미관 개선 및 성능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비/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세대 무상 및 유상 옵션

- 세대 옵션(무상/유상)관련 사항은 분양 계약 시 개별 공지 예정입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구분 | 적용여부 | 사항, 성능, 설비 위치, 설치 개수 등 |
|--------------------------------------|------|---|
| 단열 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 조치를 준수 |
| 바닥 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
| 방습 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
|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다목) | - | 해당 사항 없음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 고효율 난방, 급탕 · 급수펌프(마목) |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 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 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질수기기의 설치를 권장 |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 설비를 설치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 설비를 설치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

VIII 기타사항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 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 jdirrks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협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보전등기 및 이전 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타사 아파트의 미감 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사업시행인가도서(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미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척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 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영리 목적 외국 법인의 국내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잔금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잔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일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계약자는 공급대상의 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하자보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됨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구분 | 건축 | 구조 | 전기 | 소방 | 정보통신 |
|------|-------------|-------------|------------|------------|--------------|
| 회사명 | 예일건축사무소 | (주)옵티마엔지니어링 | (주)조은엔지니어링 | (주)반석기술단 | (주)시엔에스엔지니어링 |
| 감리금액 | 340,000,000 | 10,000,000 | 7,500,000 | 24,000,000 | 6,500,000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분 | 시행사 | 시공사 |
|--------|---------------------------------|--|
| 상호 | 도원주택건설 | (주)도원종합건설 |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심종로27번길 66, 2층 201호(중동)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북4길 95-2, 1005호(연동, 에이스아크로텔) |
| 법인등록번호 | 660-09-01707 | 549-88-00139 |

■ 홈페이지 : <http://www.ionecity.kr>

■ 분양문의 : 1811-7734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실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미감재는 주택 홍보관에서 확인바랍니다.